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활임금제도 근거 조항 신설〉

■ 장중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11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생활임금제도 근거 조항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21.
3. 회 부 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활임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생활임금제도 근거 조항 신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체결 시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4(생활임금 지급 조건부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24조의2에 따른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활임금(生活賃金, living wage)”은 노동자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액으로,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도 양질의 주거·음식·교통·건강보험·통신·여가비용 등을 충분하게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함.¹⁾

1) 김건위·최인수,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6, p5

현재 「대한민국헌법」 2) 및 「최저임금법」 3)에 따라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여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에는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도가 대두되었음⁴⁾.

생활임금제도는 2013년 경기도 부천시가 조례를 통해 처음 도입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⁵⁾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총 1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제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2)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김건위·최인수, 앞의 글, p5

5) 그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음.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충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생활임금제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⁶⁾이 발의되었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타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⁷⁾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포함시킬 수

6)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212호, 2025.03.21. 발의, 2025.03.24.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범위에서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하 이 조에서 “생활임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이나 법인·단체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활임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공공계약 체결 시 생활임금 지급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⁸⁾을 고려하면, 상위법에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임금제도를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적정 생활수준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현행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최저임금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⁹⁾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이 개정

8)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생활임금 장려) ① 도지사는 경기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부산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되는 경우 해당 조문에 따라 생활임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라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 별도의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

문 의 처
02)6788-5337

9) 「지방계약법」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참고

광역시·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 현황

(단위: 원, %)

구분	생활임금		최저임금 ¹⁰⁾ 대비 (2025년)	재정자립도
	2024년	2025년		
서울특별시	11,436	11,779	117.4%	79.8
부산광역시	11,350	11,917	118.8%	51.4
대구광역시	11,378	11,594	115.6%	47.6
인천광역시	11,400	11,630	116.0%	54.9
광주광역시	12,760	12,930	128.9%	42.7
대전광역시	11,210	11,636	116.0%	45.3
울산광역시	11,210	11,785	117.5%	51.7
세종특별자치시	11,416	11,795	117.6%	63.8
경기도	11,890	12,152	121.2%	62.7
강원특별자치도	11,415	11,678	116.4%	28.9
충청북도	11,437	11,803	117.7%	34.3
충청남도	11,500	11,730	116.9%	37.6
전북특별자치도	11,813	12,014	119.8%	27.3
전라남도	11,730	11,930	118.9%	26.9
경상북도	11,433	11,670	116.4%	29.8
경상남도	11,356	11,701	116.7%	39.2
제주특별자치도	11,423	11,710	116.7%	38.4

※ 자료: 김진하·안성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산정방식 재조정과 민간확산·취약계층 보호 위해 제도 개선 필요」, 2025.1, 서울연구원, p22

10)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임